

제264회 임시회
2007. 10. 19(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0월 8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3. 제안이유

가. 건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조문 삭제 및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인용조문 변경

(제23조 제1항, 제25조제2항, 제3항)

나. 건축법의 『재해관리구역』삭제로 인한 관련조문 삭제

(제4장)

다. 도지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건축허가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제35조)

마.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제22조)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관련 조항 삭제, 법률 인용조문 변경, 주택법 제16조와 제17조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 관련조항 신설, 기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상위법령 개정과 직제개편에 의한 조문 변경 등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와 관련하여, 조항의 신설 사유와 근거, 그리고 시·군의 조례로 정한 건축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붙임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